

장애인 교육법 (IDEA)

파트 C 절차적 보호 장치(부모의 권리)

소개

장애인 교육법 (IDEA)은 장애가 있는 영유아(출생 - 36개월) 및 그 가족을 위한 조기 개입 서비스 조항을 포함하는 연방법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IDEA 파트 C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연방 규정(34 CFR 파트 303) 및 워싱턴 주 정책 및 절차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주에서는, 파트 C 시스템은 영아 및 유아를 위한 조기 지원(ESIT)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스템은 최초 추천부터 시작하여 서비스 제공 및 전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조기 개입 절차 각 단계에서 가족 참여를 극대화하고 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ESIT 프로그램에는 부모 및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보호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4 CFR 303.400-438의 분쟁 해결 옵션을 포함하여 연방 규정 34 CFR 303.430-438에서 정의된 이러한 절차적 보호 장치는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 및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 부모의 권리 문서는 연방 파트 C 규정에 정의된 대로 자녀 및 가족의 절차적 보호장치에 대한 공식 통지입니다.

이 문서의 목적상, "부모"는 친부모, 양부모, 법적 후견인, 가정 위탁 부모 또는 자녀와 함께 사는 친부모 또는 양부모를 대신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가족 자원 코디네이터(FRC)는 가족과 협력하면서 가족이 파트 C에 따른 절차적 보호 장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자료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귀하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귀하 자녀의 발달 요구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문가들과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보호 장치 (부모의 권리) 개요

워싱턴 주 영아 및 유아 조기 지원 프로그램에서 귀하는 부모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프로그램 추천 후 달력일 기준 45일 이내에 최초 개별 가족 서비스 플랜(IFSP) 회의에서 IFSP를 개발한 이후에 여러 전문 분야의 심사 및 평가를 받을 권리. "여러 전문 분야"는 교육자 및 물리 치료사와 같은 두 개 이상의 다른 분야 또는 전문 분야의 참여를 의미합니다.

"적절한 조기 개입 서비스"는 IFSP 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 IFSP는 IFSP에서 식별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해당 자녀 및 가족의 고유한 요구 충족에 필요한 특정 조기 개입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연방 파트 C 규정 www.govinfo.gov/content/pkg/FR-2011-09-28/pdf/2011-22783.pdf는 조기 개입 서비스를 "파트 C에 따라 자격이 있는 각 자녀의 발달 요구와 자녀의 발달 향상과 관련된 가족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심사, 평가, IFSP 개발, 서비스 조정 및 절차적 보호를 받을 권리는 가족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 선별 과정(사용되는 경우) 중 언제든지 귀하의 요청과 동의가 있는 경우,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파트 C에 따라 자격이 되는 경우, IFSP에서 언급한 대로 귀하의 자녀 및 가족을 위한 **적절한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선별, 심사, 평가 및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
- 자녀의 신원 확인, 심사 또는 배치 변경 제안, 또는 자녀 또는 가족에 대한 적절한 조기 개입 서비스 제안에 관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회의에 초대되고 참석할 권리.



장애자 교육법 (IDEA) – 파트 C 절차적 보호 장치 (부모의 권리)

- 자녀의 신원 확인, 심사 또는 배치, 또는 자녀 또는 가족에 대한 적절한 조기 개입 서비스에 있어서 변경을 제안하거나 거부하기 전에 제 때에 서면 통지를 받을 권리.
- 자녀의 발달 요구 충족을 위해 적절한 범위까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각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개인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밀로 유지할** 권리.
- 자녀의 조기 개입 최초 기록 사본을 무료로 입수할 권리.
- 각 IFSP 회의가 끝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각 심사, 평가 및 IFSP 사본을 제공 받을 권리.
- 자녀의 기록을 점검 및 검토하고 해당되는 경우 수정할 권리.
- 부모/서비스 제공자 간의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 및/또는 공평한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할 권리.
- 행정 불만을 제기할 권리.

위에서 언급한 권리 외에도 파트 C에 따른 특정 절차적 보호 장치에 대한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1) 자녀의 이름, 귀하의 이름,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이름, 2) 자녀 또는 가족의 주소, 3) 자녀 또는 귀하의 사회보장 번호와 같은 개인 식별자, 4) 자녀의 생년월일, 출생지, 및 어머니의 결혼전 이름과 같은 기타 간접 식별자, 5) 자녀의 신원을 합리적 확실성을 갖고 식별 가능한 개인 특성 또는 기타 정보 목록, 6) 조기 개입 프로그램 측에서 귀하의 자녀의 신원을 알고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요청한 정보.

사전 서면 통지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는 자녀의 신원 확인, 심사 또는 배치, 또는 자녀 또는 가족에 대한 적절한 조기 개입 서비스에 있어서 변경을 제안하거나 거부하기 전에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귀하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통지는 다음 사항에 대한 충분히 상세한 정보를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조기 개입 서비스 계약자 또는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가 제안하거나 거부하는 조치.
- 조치를 취하는 이유.
- 파트 C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절차적 보호 장치.
-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 및 해당 절차에 대한 일정을 포함하여 주 정부의 중재, 불만 제기 및 적법 절차에 의한 심리 절차.

통지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한 귀하의 모국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 소통 방식이 문자 언어가 아닌 경우,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통지는 귀하의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 소통 방식으로 구두 또는 기타 수단으로 귀하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 통지를 귀하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그리고, 이러한 절차에 규정된 요건들이 충족되었다는 서면 증거를 보관한다.

부모의 동의

동의를 다음을 의미합니다:

- 귀하는 귀하의 동의가 필요한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전부 귀하의 모국어로 받았습시다.
- 귀하는 귀하의 동의가 필요한 모든 활동의 수행과, 동의에는 활동을 설명하고 공개될 조기 개입 기록 (있는 경우) 및 공개 대상이 열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 서면으로 동의합니다.
- 귀하는 동의 부여는 귀하의 자발적 결정이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의를 철회하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동의를 철회되기 전에 발생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는 사전에 귀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자녀가 장애가 의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발달 선별 검사 실시.
- 자녀에 대한 모든 심사 및 평가 수행.
- 자녀에 대한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비용 지불에 공공 혜택 또는 보험 또는 민간 보험 사용.
- 귀하 및 귀하의 자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공유.

*모국어*가 영어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이는 귀하가 사용하는 언어를 의미합니다. 자녀에 대한 심사 및 평가를 실시할 때, 모국어는 자녀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의미합니다. 귀가 먹은 또는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 눈이 먼 또는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문자 언어가 없는 사람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 모국어는 해당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사 소통 방식(예: 수화, 점자, 또는 구두 의사 소통 등)을 의미합니다.

장애자 교육법 (IDEA) – 파트 C 절차적 보호 장치 (부모의 권리)

또한 귀하의 서면 동의는 조기 개입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귀하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귀하에 대한 강요(강제) 조치는 없을 것입니다. 즉, 가족 자원 코디네이터(FRC) 또는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는 귀하의 동의 거부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적법 절차에 의한 심의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 자원 코디네이터(FRC),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 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직원은 다음의 사실을 귀하가 알 수 있도록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귀하의 선별 검사, 심사 및 평가 또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성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동의하지 않으면 자녀는 선별 검사, 심사 및 평가 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파트 C에 따라 자격이 되는 자녀의 부모로서, 귀하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자녀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조기 개입 서비스를 수락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ESIT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다른 조기 개입 서비스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 서비스를 처음 수락한 이후에도 그러한 서비스(가족 자원 코디네이션 규정에서 요구되는 행정 기능 제외)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록

기밀 보장

이 문서에서 기술된 정보 절차의 기밀 보장에 따라, 선별 검사, 심사, 평가, 자격 결정, IFSP 개발 및 실행,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자녀에 대한 개별 불만 제기, 그리고 자녀 및 가족에 관한 기록과 관련된 파트 C의 다른 부분을 귀하가 점검하고 검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각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는 귀하의 자녀가 파트 C에 따라 조기 개입 서비스에 추천된 날로부터 참여 기관이 해당 연방 및 주법에 따라 정보를 보유할 필요가 없거나 더 이상 보유를 하지 않을 때까지 계약자 또는 제공자가 수집, 유지 또는 사용하는 귀하의 자녀 또는 가족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귀하가 점검하고 검토(업무 시간 중)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는 귀하의 자녀와 가족에 대한 신원 확인, 심사, 배치, 또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IFSP 또는 심리에 관한 회의 전에 지체 없이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요청한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조기 개입 기록을 점검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기록의 설명 및 해석에 관한 합리적인 요청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응답을 받을 권리.
- 이러한 사본을 제공하지 않으면 귀하가 기록을 점검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 사용을 사실상 방해하는 것이 되는 경우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가 포함된 기록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권리.
- 귀하를 대리하는 사람이 기록을 점검하고 검토할 권리.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자 또는 제공자가 양육권, 위탁 양육, 법적 후견인, 별거 및 이혼과 같은 문제를 관할하는 해당 주법에 따라 권한이 없다는 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한 귀하가 자녀와 관련된 기록을 점검하고 검토할 권한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각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는 당사자의 이름, 접근권이 주어진 날짜, 당사자에게 자녀의 기록을 사용할 권한이 주어진 이유를 포함해 파트 C에 따라 수집, 입수 또는 사용된 기록에 대한 접근권(그런한 계약자 또는 제공자의 승인된 직원에 의한 접근은 제외)을 획득한 당사자의 서면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조기 개입 기록에 한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귀하는 자녀, 또는 귀하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점검 및 검토하거나, 해당 특정 정보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는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자 또는 제공자가 수집, 유지, 또는 사용한 조기 개입 기록의 유형 및 위치 목록을 귀하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는 수수료의 부과가 귀하가 그러한 기록을 점검하고 검토할 기회 이용을 사실상 방해하지 않는 경우 파트 C에 따라 귀하를 위해 작성된 기록의 사본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파트 C에 따라 정보를 검색하거나 검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각 심사, 자녀 평가, 가족 평가, 및 각 IFSP 회의 이후 IFSP의 사본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귀하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자 교육법 (IDEA) – 파트 C 절차적 보호 장치 (부모의 권리)

파트 C에 따라 수집, 보유, 또는 사용된 조기 개입 기록에 있는 정보가 부정확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귀하 또는 귀하 자녀의 개인 정보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귀하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한 계약자 또는 제공자는 요청을 받은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요청에 따라 해당 정보의 수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그러한 계약자 또는 제공자가 귀하가 요청한 정보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 사실과 심리를 청구할 권리를 귀하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섹션에서 사용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는 개인 식별이 더 이상은 불가능하도록 개인 식별자를 물리적으로 파기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조기 개입 기록,” “교육 기록(들)” 또는 “기록(들)”은 파트 C에 따라 수집, 보유 또는 사용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기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 “참여 기관”은 파트 C의 요건 이행을 위해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 보유, 또는 사용하는 모든 개인, 기관, 단체 또는 공공 기관을 의미합니다. 참여 기관에는 주 정부 주요기관, 파트 C 서비스(서비스 조정, 심사 및 평가 그리고 기타 파트 C 서비스 포함)를 제공하는 각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가 포함됩니다. 조기 개입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는 주요 추천 출처나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는 요청시 조기 개입 기록에 있는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귀하 또는 귀하 자녀의 개인 정보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 교육권 및 개인정보법(FERPA) 규정 34 CFR 99.22와 일치하는 파트 C 절차 또는 심리 절차에 따라 귀하는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심리 결과, 해당 계약자 또는 제공자가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귀하 및 귀하 자녀의 기타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수정하고 귀하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심리 결과, 해당 계약자 또는 제공자가 정보가 부정확하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없으며, 귀하 및 귀하 자녀의 개인 정보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귀하는 자녀의 기록에 정보에 대한 의견과 계약자 또는 제공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는 진술서를 첨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귀하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절차에 따라, 자녀의 기록에 첨부된 모든 설명은 기록 또는 논란이 되었던 부분(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기록의 부분)을 해당 계약자 또는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귀하의 자녀의 기록의 일부로써 보유해야 합니다.
- 귀하 자녀의 기록 또는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해당 계약자 또는 제공자에 의해 어느 당사자에게 공개되는 경우, 귀하의 의견 역시 해당 당사자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공개 사전 동의

개인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은 경우 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파트 C (34 CFR 303.414) 및 FERPA (34 CFR 99.31)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한, 파트 C에 따라 정보를 수집, 보유 또는 사용하는 계약자 또는 제공자의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경우.
- 파트 C의 요건 충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는 FERPA에 따라 그렇게 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한 귀하의 승인 없이 다른 기관에 귀하 자녀의 조기 개입 기록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동의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절차가 귀하의 동의 거부권을 무시하지 않는 한 동의를 제공하지 않게 되면 귀하의 자녀가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등 거부와 관련된 절차를 이행합니다.

파트 C에 따라, ESIT는 주 교육 기관(공교육 교육감실) 및 귀하의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 교육 기관(지역 교육구)에 귀하 자녀의 이름 및 생년월일, 그리고 귀하의 연락처 정보(귀하의 이름, 주소 및 전화 번호 포함)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IDEA의 파트 B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아동들을 식별하는 데 필요합니다.

장애자 교육법 (IDEA) – 파트 C 절차적 보호 장치 (부모의 권리)

기록의 기밀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각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는 수집, 보유, 보관, 공개 및 파기 단계에서 개인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 각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의 직원 한명이 개인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 개인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IDEA 및 FERPA를 준수하는 워싱턴 주의 파트 C 정책 및 절차에 대한 훈련이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각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관 내부의 직원의 이름과 직위에 대한 최신 목록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유해야 합니다.
-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는 수집, 보유 또는 사용된 개인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파트 C, 20 USC 1232f의 GEPA 규정 및 34 CFR 파트 76 및 80에 따라 귀하의 자녀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부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해당 정보가 자녀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는 부모의 요청에 따라 파기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부모 연락처 정보(주소 및 전화 번호 포함), 서비스 코디네이터(FCR)의 이름, 및 조기 개입 제공자, 서비스 종료 데이터(연도 및 서비스 종료 당시의 나이, 그리고 서비스 종료 후 가입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영구 기록들은 시간 제한 없이 보유해야 합니다.

분쟁 해결 절차

자녀의 조기 개입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FRC 또는 IFSP 팀과 공유하십시오. ESIT 프로그램은 가능한 한 낮은 수준의 분쟁 해결을 장려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 해결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자녀의 신원 확인, 심사, 배치, 또는 귀하의 자녀 또는 가족에 대한 적절한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문제를 제 때에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쟁 해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공식 절차입니다. 여기에는 중재, 공평한 적법 절차 심리 및 행정 불만 제기가 포함됩니다.

중재

중재는 비 적대적인 방식으로 의견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자발적이며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합의되어야 합니다.

주 주무 기관은 중재 절차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부모 및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에게 중재 절차의 이점을 설명하고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양 당사자가 귀하가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분쟁 해결 단체 또는 부모 교육 및 정보 센터 또는 주 내에 있는 커뮤니티 부모 자원 센터와 계약 관계에 있는 객관적 당사자(공평한 중재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주 주무 기관이 중재 요청을 접수한 후 제 때에 완료되어야 하며 공평한 적법 절차 심리에 대한 귀하의 권리를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또는 파트 C에 따른 귀하의 기타 권리를 거부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재는 제 때에 일정이 잡히고 양 당사자에게 편리한 장소에서 열리게 됩니다. 효과적인 중재 기술에 대한 훈련을 받은 자격을 갖춘 공평한 중재자는 양 당사자를 만나 비공식적이고 비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분쟁의 해결책을 찾도록 도울 것입니다.

주 주무기관은 장애가 있는 영유아 및 그 가족을 위한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알고 있는 자격을 갖춘 공평한 중재자 목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재자는 무작위, 순환 또는 기타 공평한 기준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주 주무 기관은 중재를 장려하기 위해 모든 회의 비용을 포함한 중재 비용을 부담합니다.

분쟁이 중재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해결책을 기술하고 중재 과정 중에서 발생한 모든 논의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후속 적법 절차에 따른 심리 또는 민사 소송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동 합의서에는 귀하와 해당 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주 주무 기관의 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합니다. 서면으로 작성되고 서명이 된 중재 합의서는 관할권이 있는 모든 주 법원 또는 미국 지방 법원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중재는 귀하가 언제든지 공평하고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설명한 대로 귀하의 중재 및 공평한 적법 절차 심리 요청은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평한 적법 절차 심리

공평한 적법 절차 심리는 공평한 심리 담당관이 수행하는 공식 절차이며 자녀를 대신하여 개별 불만 제기를 제기하고자 하는 가족을 위한 옵션입니다.

공평한 적법 절차에 의한 심리는 요청을 접수한 후 달력일 기준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서면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중재는 시도할 경우 동일한 달력일 기준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법 절차에 의한 심리를 수행할 심리 담당관은 임명됩니다. 심리 담당관은 파트 C의 조항과 적격 자녀 및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다음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불만 사항에 대한 관련 정보의 제시를 경청하고, 문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검토하며 불만 사항을 제 때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서면 결정을 포함하여 주 정부의 비용으로 심리 절차 기록을 제공한다.

중재 및 심리 담당관의 자격: 중재자 및 적법 절차 심리 담당관은 “공평”해야 합니다. 공평함이란 중재자 또는 심리 담당관 역할에 임명된 사람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것을 의미합니다: (1) 주 주무 기관,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에 관여하는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 기타 서비스 제공자, 또는 보육 서비스 제공자의 직원이 아니 사람. 그리고 (2) 중재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객관성과 상충되는 개인적 또는 전문적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 중재자 또는 심리 담당관으로 달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중재 또는 적법 절차에 의한 심리 조항 이행에 한하여 주 주무 기관 또는 프로그램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주 주무 기관,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의 직원이 아닙니다.

파트 C에 의거 이러한 절차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적법 절차 심리에서 귀하는 아래에 열거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 변호사(비용은 귀하가 부담) 및 파트 C에 따라 자격이 되는 자녀를 위한 조기 개입 서비스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나 훈련을 받은 개인(비용은 귀하가 부담)을 동행하여 조언을 받을 권리.
-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에 맞서고, 반대 심문을 하고, 증인의 출석을 강요할 수 있는 권리.
- 달력일 기준 심리 절차 최소 5일 전에 공개되지 않은 증거를 심리에서 제시하지 못하도록 할 권리.
- 서면 또는 전자 축어(말을 그대로 옮긴) 심리 기록을 무료로 입수할 권리.
- 서면으로 된 사실의 판정 및 결정을 무료로 입수할 권리.

이 절차에서 기술된 공평한 적법 절차 심리는 귀하에게 합리적으로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 주무 기관이 귀하의 불만을 접수한 후 달력일 기준 30일 이내에 공평한 법적절차 심리를 끝내야 하며 서면 결정을 각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심리 담당관은 양 당사자 중 일방의 요청에 따라 30일 이상의 특정 시한 연장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공평한 법적 절차 심리의 판단 및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 당사자는 주 또는 연방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와 귀하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적법 절차에 의한 불만 제기와 관련된 모든 소송 절차의 계류(기간) 동안 귀하의 자녀 및 가족은 귀하가 동의한 IFSP에서 식별된 환경에서 적절한 조기 개입 서비스를 계속 받게됩니다.

불만 사항이 파트 C에 따른 최초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경우, 귀하의 자녀 및 가족에게 분쟁과 관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행정 불만 제기

위에 열거된 중재 및 적법 절차에 의한 심리 절차 외에도 다른 주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조직을 포함한 개인 또는 조직은 파트 C 프로그램의 요건을 위반하는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여 모든 공공 기관 또는 민간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 및 서명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 주무 기관은 부모 교육 및 정보 센터, 보호 및 옹호 기관 및 기타 적절한 단체를 포함해 부모 및 기타 관심있는 개인에게 주 정부의 불만 처리 절차를 널리 전파합니다.

불만 제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주무 기관, 공공 기관 또는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가 파트 C의 요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진술.
- 진술의 근거가 되는 사실.
-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의 서명 및 연락처 정보.
- 특정 자녀에 대한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 해당 자녀의 이름 및 거주 주소.
 - 조기 개입 서비스 계약자 또는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
 -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포함한 해당 자녀 관련 문제의 성격에 대한 설명.
 - 불만이 제기된 당시에 알려지고 이용 가능한 범위까지 문제에 대해 제안된 해결책.

장애자 교육법 (IDEA) – 파트 C 절차적 보호 장치 (부모의 권리)

행정 불만 제기는 위반 혐의 발생 일(1)년 이내에 주 주무 기관에 제출 및 접수되어야 합니다. 불만을 제기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해당 불만을 주 주무 기관에 제기하는 동시에 자녀를 돌보는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만 제기 사본을 전달해야 합니다.

주 주무 기관이 불만 제기를 접수하면, 달력일 기준 60일 이내에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 주 주무 기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독립적인 현장 조사 수행.
- 불만을 제기한 개인이나 조직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불만 주장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출할 기회 제공.
- 주 주무 기관의 재량에 따라 불만 사항 해결 제안 및 모든 당사자들이 중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하여 기관/제공자에 불만 제기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파트 C의 요건 위반 발생 여부에 대해 독립적 결정을 내림.
- 불만을 제기한 사람에게 불만 사항 각 혐의를 다루고 사실의 판단과 결정 및 주 주무 기관의 최종 결정 이유가 포함된 서면 결정을 송부.

최종 결정에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시사하면, 주 주무 기관은 다음 사항을 해결해야 합니다:

- 불만의 대상인 귀하의 자녀와 가족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시정 조치(보상 서비스 또는 금전적 보상 등)를 포함하여 적절한 서비스 제공 실패.
- 장애가 있는 영아 및 유아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향후 서비스 제공.

주 주무 기관은 필요한 경우 기술 지원 활동, 협상 및 규정 준수를 위한 시정 조치를 포함하여 결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적법 절차 심리 주제이기도 하거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심리 부분인 다수의 문제가 포함된 서면 불만이 접수된 경우, 주 주무 기관은 심리에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적법 절차 심리에서 다루게 될 불만 사항의 부문은 계류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적법 절차 조치의 일부가 아닌 불만 사항의 문제는 이 문서에서 기술한 대로 달력일 기준 60일 시한과 불만 제기 절차 내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당사자가 참여하는 적법 절차 심리에서 이미 결정된 불만 사항은 이 절차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주 주무 기관은 심리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불만 제기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공공 기관 또는 민간 서비스 제공자(조기 개입 서비스 계약자 또는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 포함)가 적법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불만은 주 주무 기관이 해결해야 합니다.

대리 부모

다음의 경우 파트 C에 따라 자격이 되는 아동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 부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가 합리적인 노력을 한 후에도 부모를 찾을 수 없는 경우.
- 또는, 해당 아동이 주 법에 따라 워싱턴 주의 피보호자인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개인이 부모의 "대리" 역할을 하도록 지정됩니다.

이러한 절차에는 아동에게 대리 부모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아동에게 대리 부모가 필요하다는 것을 결정한 후 달력일 기준 30일 이내에 아동에게 대리 부모를 지정하는 합리적인 노력을 하는 방법이 포함됩니다.

대리 부모 선정에는 다음 기준이 사용됩니다: 대리 부모는 각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선정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자신이 대리하는 아동의 이해와 상충되는 개인 또는 전문적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
- 아동을 적절하게 대리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사람.
- 주 정부 기관의 직원이 아닌 사람. 또는 조기 개입 서비스, 교육, 보육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아동 또는 그의 가족 구성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의 직원. 이러한 절차에 따라 달리 대리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단지 대리 부모의 역할을 하기 위해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보수를 받는 사람인 경우에는 직원이 아닙니다.

아동이 워싱턴 주의 피보호자이거나 가정 위탁 시설에 배정된 경우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기관은 해당 아동을 배정한 공공 기관과 상의해야 합니다.

주 정부 피보호 아동의 경우,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가 임명하는 대신, 선정이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한 해당 아동 사례를 감독하는 판사가 대리 부모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대리 부모는 파트 C에 따라 모든 목적에 대해 부모와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연락처 정보

절차적 보호 장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다음 주소로 지역 가족 자원 코디네이터(FRC)에게 문의하십시오:

또는

불만을 제기하고, 중재 및/또는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할 계획이 있으면, 다음 주소의 영유아 조기 지원(ESIT)에 문의하십시오: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Children, Youth & Families (워싱턴주 아동, 청소년 및 가족부)

Early Support for Infants and Toddlers (영유아 조기 지원, ESIT)
PO Box 40970
Olympia, Washington 98504-0970
esit@dcyf.wa.gov
www.dcyf.wa.gov/services/child-development-supports/esit

부모 옹호 자원:

Washington PAVE
(행동을 위한 파트너십, 권한 부여를 위한 목소리)
6316 S. 12th St.
Tacoma, Washington 98465
전화: 1-(800) 5-PARENT
팩스: (253) 566-8052
www.wapave.org